

우리나라 성악계 복지의 문제요인과 이탈리아 예술인 복지제도 인피스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Factors of Classical Voice Artists Welfare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the Italian INPS

정성영¹

Sung Young Jung¹

요 약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성악 분야는 문화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애요인과 전담기관의 실질적 역할의 부재, 그리고 관행적으로 실행되는 불합리한 계약관계 등의 문제요인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악계를 중심으로 국내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요인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예술인 복지제도의 사례인 이탈리아의 특별사회보장제도 인피스(INPS)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악가들을 위한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인피스는 예술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비정기적 활동 유형을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인피스 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성악가들의 예술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성악계의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국내 성악계에 적용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예술인복지, 성악가, 인피스, 사회보장제도

Abstract

The welfare system for artists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inuing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without genre specificity. The field of classical voice artists lies in the blind spot of the welfare system in spite of its cultural contribution due to problem factors such as systemwide obstacles, absence of the governing agency's role, and unreasonabl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lassical voice artists welfare system and the problem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case of the exemplary system of the artist welfare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s drawn the implication of the INPS system, a speci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Italian performing artists, which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welfare system for vocalists. INPS is implementing an effective welfare system that recognizes the types of irregular activities of artist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ity of artistic activity.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INPS system, we ultimately sought institutional ways to guarantee and support the artistic activities of domestic vocalists, and to improve the necessity an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effective welfare system for artists, considering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vocal music, and to propose a solution that can be applied to.

Keyword : artist welfare, classical voice artist, INPS, social welfare system

¹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addeo@naver.com

Received(June 24, 2018), Review Result(1st: July 15, 2018), Accepted(December 04,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예술인 복지의 현황

선진국의 기준은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는 국민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복지혜택은 소위 4대 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공되는 혜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1].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실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들은 불확실한 고용형태로 많은 부업 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2]. 예술인들의 특성상 장르와 창작 방법에 따른 활동 영역이 다르므로 프리랜서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이로 인한 불공정 관행 등 고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예술인을 포함한 창의성이 주축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작업 특성상 직업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2년부터 국가 주도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되었지만 기본적인 4대 보험의 실효성이 부재하고, 예술인 인구에 비해 예산책정도 많이 부족하다[3].

1.2 성악계 복지의 필요성

성악 분야는 대표적인 고전예술 분야로 장르의 위상과 역사성, 지명도, 사회문화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애요인과 전담기관의 실질적 역할의 부재, 그리고 관행적으로 실행되는 불합리한 계약관계 등의 문제요인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미디어의 발전과 문화환경의 변화로 관객 감소와 시장 축소 등 제작 및 창작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며 실업률도 높은 예술 장르이다. 성악가를 비롯한 공연예술인들은 오페라 등의 화려한 이미지에 반해 불규칙적인 근로 활동에 따른 불안정한 수입과 소속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성악가를 위한 복지제도의 실정은 이러한 공연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복지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국가 차원의 예술인 지원제도 또한 성악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금의 경우도 예술인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악가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악계를 중심으로 국내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제도가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예술인 복지제도의 사례인 이탈리아의 특별사회보장제도 인피스(INPS)를 분석하고 국내의 예술인 복지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피스 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성악가들의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성악계의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국내 성악계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성악가 복지제도 문제점 및 요인

2.1 예술인 직업군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요인

문화예술분야의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예술인 복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4]. 예술인 직업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요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자격기준과 예술인복지법의 한계점을 통해 지적할 수 있다.

2.1.1. 근로기준법

국내 예술가들에게는 아직 국가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업종이 노동자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의 직업 형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현실은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속한다[5].

[표 1] 근로자와 노동자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Worker and Labor

분류	정의	부연설명
근로자 (勤勞者)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6]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타인에 의사결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동자 (勞働者)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賃金)으로 살아가는 사람[7]	실질적인 종속 노동관계에 놓여 있는 노동자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일반보험가입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형태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술인들은 대부분 월 소정 근로 시간을 소명할 수 없어 우리나라 복지의 기준인 4대 보험가입 제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노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주와의 종속노동관계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주말과 야간에 주요 활동을 하는 특수성과 시급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인건비 산출 등의 문제로 활동에 대한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부재하

고, 지정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영업으로 분류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6][8].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5].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예술가를 고용하는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못하고 규정이나 조례를 통해 고용시간을 조작하는 등 계약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화하는 제도적 발전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효과적일 것이다.

2.1.2.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증진과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예술인복지법은 과거의 문화예술복지법과 달리 문화예술 향유자가 아닌 실현자를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기존의 법안과는 차이점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3].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으로 그동안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던 많은 예술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 정의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제도 안에서 예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예술인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3][9].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 17일 정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 했다. 이 법에 따른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1][10].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첫 발판이 되었다고는 하나 예산 부족 및 노동법 등 각 부처와의 법적 관계성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서 예술인들은 배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창의적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편

적 사회보장체계로 보호받기 어렵고, 창의적 작업 가진 사회적 기여 및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 그러나 전체 예술인 지원정책으로서 방향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한시적 경제지원 방향이므로 전체 창의노동의 특수성 및 다각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인피스 복지제도 분석

3.1 인피스(INPS) 정의 및 역할

성악가들을 위한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국립사회보장협회기관 인피스(IL'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는 이탈리아의 공연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비정기적 활동 유형을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특별사회보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인피스(INPS)는 유럽에서 가장 큰 복지기관으로, 이탈리아의 복지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여 특히 자영업자와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의 대부분을 보장한다.

[표 2] 이탈리아 성악가를 위한 인피스 제도와 국내 예술인복지제도 현황 비교

[Table 2] Italian INPS System and Korean Artist Welfare System Comparison

구분	이탈리아	국내
복지기관	인피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적제도	특별사회보장 장르별 특수 직종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근거 일반적 복지 적용
대상	예술분야 종사자 성악, 문학, 미술 등 18세 이상 음악, 조각, 문학, 작가 등 공연 관련 종사자	예술분야 종사자 음악, 조각, 작가 등 18세 이상 음악, 조각, 문학, 작가 등 예술 종사자
복지혜택	연금, 의료, 고용, 산재, 금융, 주택 자금 등 전반적인 복지 일체	예술인 파견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차상위 예술인들을 위한 소정의 창작지원 금 지원, 특정 예술인 산재 지원 등
운영방법	예술문화 기부금 펀드 운영 및 세금 혜택 법적 의무 세금코드 운영 법적 의무 수입전용계좌 운영 고용주 세금코드 없이 법적 고용 불가 임금전용 계좌로 송금 의무	신청 및 증명, 심의 예술인 등록 후 지원 분쟁 상담 민원 등
법적 사항	위반시 벌금 부여 및 세금조사	소정의 소송 지원금 지원 및 민원 접수
효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법적으로 예술가들의 금융 신용 및 사회적 지휘와 권익 보장	차상위 예술인 집종의 기본 복지 지원 등
역할	민원 접수, 해결 및 분쟁 조정, 감찰	소정(기본) 지원금 지원

1947년 7 월 법령으로 공연관련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 복지 지원 기관인 ENPALS를 설립하였다. ENPALS는 처음에는 운동 분야 종사자를 위한 스포츠 공적 연금으로 시작되었으며 급진적 사회 확대로 주요 사회 보장 기관으로 발전하였다[11]. 2010 년부터는 화가와 조각가, 음악가, 작가 등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 보장을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인피스(INPS)로 병합되었다.

인피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증명서(세금코드), 전용계좌를 발급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술인들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지정된 계좌로 출연료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연예술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정당하게 세금도 징수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극장주 등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일 25유로(한화 약30.000원) 벌금을 부과 및 세금조사를 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를 부과한다. 노동자들이 장애, 노후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인피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복지 시스템의 기둥이 되어 중요성이 증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성악가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12].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들의 사회 보장제도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은 예술인들은 배제되어 있으며 예술인들은 장르와 작업 환경의 특성에 따른 직업군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각 부처와의 법적 적용 관계성이 부족하여 사실상 실효성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제도는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했던 국내 예술인 복지제도와 인피스 제도의 비교를 통해 성악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인피스 제도에서 보여주듯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예술시장의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악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세금 코드 및 전용계좌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성악가의 활동 기간과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로 정식계약을 유도하고 출연료 수입 전용 계좌의 법적 활용 의무화 및 활동 수입 산출 마련을 통한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성악인들은 정확한 수입과 그에 따른 세금 계산의 투명성을 정착시켜 이를 근거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유명 음악인 및 기업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기부금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 참여 기업들의 세금 혜택 및 문화예술기여 포인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에 가산점 제도 시행으로 복지 펀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성악가를 비롯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기

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예술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또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과 같이 성악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전문성악인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성악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성악가들의 취업 및 복지현황과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강구할 수 있다.

References

- [1] Sangchul Kim, "Welfare of the artist, what is the problem." *Culture/Science* 84 (2015): 105-128.
- [2] Eun Na, "Status of the Artist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Case of Internal and External Cultural Policy." Dis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3] Ga Won Yoo, "A Study on the Desirable Welfare Direction for Dancers through Analy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Welfare Systems." *Korean Dance Association*, 71.3 (2013): 67-89.
- [4] Boyun, Choe and Chairin An, "Som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Artists' Welfare Act from a perspective of Creative Labour."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42 (2017): 65-102.
- [5] Editorial Board, "Welcome to announce unemployment benefits apply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and artists." *Monthly welfare trends* 239 (2018): 77-79.
- [6] Labor Standards Act, 21 Jan (2014).
- [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91>, Accessed 10 November (2018).
- [8]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7250&type=new&key=, Accessed 29 December (2015).
- [9]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12 June (2018).
- [10] Artist Welfare Act, 4 May (2016).
- [11]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 Accessed 5 November (2018).
- [12] Moongil Kim, "Review of overseas cases related to arts welfare support system and implications." *Global Social Security Today* (2008): 27-36.